

교직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05. 3.

개 정 2010.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교직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으로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직과정 설치 학과 및 이수인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은 교원자격 검정령 제20조와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직과정설치승인서”에 의한다.

제3조 (이수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중 소정의 기간에 이수신청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자격) 교직과정이수신청은 교직과정이 승인된 학과에 1학년으로 입학하여 해당학과에서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제5조 (이수자선발) ①교직과정이수자 선발은 해당학과에서 승인된 인원 내에서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한다.

②평점평균은 선발당시 성적증명서에 등재된 성적을 기준하여 평가토록 한다.

③대상학생 중 인성 및 적성 등이 교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이수기준) ①교직과정이수자 중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0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1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직과목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직과정이수 예정이 아닌 자가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③교직과정이수자 중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전공과목 이수는 기본이수영역 14학점(5과목)을 포함하여 총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전공과목 이수는 기본이수영역 21학점(7과목)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상실) 교직과정이수자가 전과할 경우 교직과정 이수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이수인정) 교직과정이수자 중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직 및 전공과목(42학점을 초과한 전공 학점 포함)의 전학년 평균성적이 각각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교직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졸업 전체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인 경우에만 교직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평점으로 부여된 평균성적은 별표1(점수환산기준표)에 의거하여 산출 한다.

제9조 (교육실습) ①교직과정이수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4주 이상 교육실습을 하여야한다.

②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습생이 부담한다.

③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육실습 4학점(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실습계획) ①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는 교직과정설치 신청 시 지정한 협력학교등과 협의하여 교육실습계획을 수립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실습계획은 소속 학과 또는 협력학교 등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졸업유보) 교직과정 이수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라도 교직과정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제12조 (자격증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최종 학기 소정의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자격증교부신청서 1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